

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(소득영 §168의14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·임야·목장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6년말 이전 20년이상 소유하여 '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- '06년 말까지 상속받아 '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인정고시일이 '06년말 이전 -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<p>※ 중과(60%) 제외시 기본세율*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** 적용</p> <p>* (09)6%~35%, (10)6%~33%</p> <p>** 3년이상 보유시 연3% 최대 30%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농지 등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(좌 동) - 8년이상 재혼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(증여)받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○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5년 이상 보유한 토지

<개정이유> 상속농지 등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지원

<적용시기>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